개정 금융실명법 안내

2014. 11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1 경과

□ 불법 차명거래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금융실명법 개정**('14.5.28. 공포, '14.11.29. 시행)

○ 개정 전 금융실명법은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를 금지하지 않아 차명거래가 범죄수단으로 악용

○ 개정법은 **불법 차명거래 유형**을 **법률에 열거**하여 **금지**

* 개정 이전 법은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를 금지하지 않아 차명계좌가 범죄수단으로 악용

□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14.9.15)

2 개정법의 주요 내용

1 **(금지행위)** 불법·탈법행위 목적* 차명거래와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행위

*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의 탈법행위 목적

2 **(차명계좌 소유권)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

3 **(금융회사 의무)**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주요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

4 **(실명거래 확인업무의 위탁 가능) 위탁근거 신설** 및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함

5 **(제재)** 불법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3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1 **(실명거래의 확인방법을 규정)** 기존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었던 "실명거래의 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 제3조 제7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반영(**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2 **(금융회사등 상호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 금융회사등 상호간에는 실명확인 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고, 금융위원회가 위·수탁기관, 범위, 방법 및 효력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3 **(기존 법 개정내용 반영)**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범위를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건수, 통보 및 통보유예건수로 확대하는 등 기존 법 개정내용 반영 (시행령 제11조)

금융실명법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Q&A

(2014. 11. 12.)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 본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Ⅰ.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취지 〉

□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임

*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예금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함(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 개정 내용 〉

1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제3조 제3항)

○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됨(반면, 선의의 차명거래는 가능)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 **실명**(實名)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제3조 제5항)

2 **금융회사 종사자**는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해서는 **안됨**(제3조 제4항)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3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함(제3조 제6항)

※ 위반시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가능

Ⅱ. 개정내용별 Q&A

1 불법 차명거래 금지

Q.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지?

❑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①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②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③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Q.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그 밖의 탈법행위'란?

❑ **'그 밖의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Q.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②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③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증여세 감면 범위(10년간 합산금액) ('14. 10월말 기준)

- **배우자** : 6억원
- **자녀**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부모** : 3천만원
- **기타 친족** : 5백만원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⑤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Q. 불법 차명거래시 명의대여자도 처벌되는지?

❑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강제집행 면탈죄) 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 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전체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 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Q. 금융회사 임직원은 거래자의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불법 차명거래는 위법임을 설명**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보고**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또한, 차명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인지?

❑ 해당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는지?**

❑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Q.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회사 명의로 하는 거래 등도 금지되는지?**

❑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되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는 가능**합니다.

Q.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2 알선 · 중개행위 금지

Q.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 또는 중개행위' 란?

❑ 일반적으로 '**알선행위**'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는 행위**이며, '**중개행위**'란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 종사자가 단순히 금융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에 그치고,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의 **소개 · 권유 등 알선이나 중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Q. 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를 개정법 시행 후 해지한 경우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게 되는지?

❑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Q. 단체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 학교 학생들, 직장 근로자들의 예금을 일괄 유치하는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차명거래 알선 · 중개로 처벌받는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직원이 개별 금융**거래자의 거래목적을 알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 직원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3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Q.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Q.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자동 재예치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 재예치도 계좌 신규 개설과 동일하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좌번호 변경 없는 만기 자동 재예치**는 예치기간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설명의무 이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설명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 설명 및 확인 문구 예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고객성명 _____ (인·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_____**의 대리인**_____ (인·서명)

Q.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② (생략)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 설>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 절차, 확인업무의 위탁과 --- 대통령령--------. 제5조의2(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벌칙)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 5천만원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제7조(과태료) ① ---------- 3천만원 ----------. ② (현행과 같음)

금융실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 12. (생 략)	제2조(금융회사등) ---------- ---------- ---------- 하목------ ---------- ----------. 1. ~ 12. (현행과 같음)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 4. (생 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제3조(실지명의)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금융위원회가 --------
<신 설>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

	민등록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 4. 외국인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

	우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② 금융회사등 상호간에는 실명확인 업무를 위·수탁 할 수 있다. 다만, 실명확인 업무의 위·수탁 기관, 범위, 방법 및 효력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금융회사등----------.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기관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 --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 종사자----------.
② 금융기관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② 금융회사등 종사자----------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 ----------.
③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 ---------- ---------- ---------- ---------- ---------- -.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금융회사등------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명의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를 말한다)에 등록한 인	6. ---------- 금융회사등----- ----------, 인감증명서상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감의 날인. 이 경우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을 포함한다)상 서명.---------- ---------- ---------- ---------- ---------- ------.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 ---------- ---------- ---------.
제9조(동일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지점·영업소 및 당해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거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 금융회사등---- ---------- 금융회사등--- ---------- 금융회사 등---------- ---- 금융회사등---------- ----------.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② ---------- --- 금융회사등 ---------- ----------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

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이 법령 또는 금융기관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수집·관리·제공하는 자나 거래자간의 금융자산이체 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금융회사등 ----------금융회사등---------- ----------.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명의인의 인적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금융기관이 누구의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5. ---- 금융회사등---------- ---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 --- 금융회사등---------- ----------.
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금융위원회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	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 ---------- 금융회사

기관을 법령에 의하여 감독·검사하는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 감독·검사기관의 장에게 금융기관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건수, 요구기관별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2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등---------- ---------- 금융회사등 ------- --------- 금융회사등--------- ----------요구 및 제공건수, 통보 및 통보유예건수에 ---------- ----------.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장	3.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생 략)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명거래의 확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 재외국민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삭 제>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영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영 제3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단체등록증 또는 여권·신분증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4조(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 ---------- 다음 각호와 ---.
<신 설>	1. 감사원장
<신 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 설>	3. 금융감독원장

<신 설>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신 설>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신 설>	6. 산림조합중앙회장
<신 설>	7.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신 설>	8.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신 설>	9.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제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여야 한다.
[별표]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	<삭 제>